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93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과반수”를 “2분의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시험문제의 출제, 편집 및 시험의 감독과 답안의 채점 등에 종사한 자와 면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하되, 면접위원은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.

제10조의1제2항 중 “3명 미만”을 “10명 이하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52조”를 “제56조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문화관광본부장”을 “문화체육시설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3항 중 “추천하여”를 “추천하여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제37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본부장으로”를 “문화체육시설본부장으로”로, “문화관광 본부장, 환경복지본부장”을 “문화체육시설본부장, 환경복지시설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2 본문 중 “원활한 인사위원회”를 “원활한”으로, “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위원회 개최 1회 1인당 100,000원 범위 안”을 “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4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8-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의2]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제2항관련)

구 분	평정종류	평정대상자	1차평정자	2차평정자	3차평정자
일 반 직	개인 업적평정	직원 (비보직자)	팀장	부장	-
	역량평정	부장 (보직자)	본부장	이사장	-
		팀장 (보직자)	부장	본부장	이사장
		직원 (비보직자)	팀장	부장	본부장
일 반 직 (안전감사실)	개인 업적평정	직원 (비보직자)	실장	-	-
	역량평정	실장 (보직자)	이사장	-	-
		직원 (비보직자)	실장	이사장	-

[별표 4의3]

평정별 평정 비율

구 분	평정대상자	1차평정자	2차평정자	3차평정자	비고
개인업적평정	직원 (비보직자)	50%	50%	-	이사장 조정
	직원 (안전감사실)	100%	-	-	이사장 조정
역량평정	부장 (보직자)	50%	50%	-	
	안전감사실장	100%	-	-	
	팀장 (보직자)	40%	30%	30%	
	직원 (비보직자)	40%	30%	30%	
	직원 (안전감사실)	50%	50%	-	

[별표 8-2]

음주운전 징계기준(제48조 관련)

유 형 별	징계요구 (처리기준)	징계기준
1.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. 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. 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. 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.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	경징계 또는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	정직~감봉 강등~정직 해임~정직 해임~정직
2.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파면~강등
3.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파면~해임
4.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강등~정직
5.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중징계	파면~강등
6.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.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나. 사망사고의 경우 다. 사고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)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)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	해임~정직 파면~해임 해임~정직 파면~해임
7.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.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나.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	중징계 중징계	파면~해임 해임~정직

비고

1. “음주운전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.
2. “운전업무 관련 직원”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.
3.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.

[별표 11]

부서별 정원표

부서명				계	임원	일반직
총계				252	3	249
임원				3	3	-
안전감사실				5	-	5
문화체육시설본부	경영기획부	기획예산팀		4	-	4
		인사재무팀		7	-	7
	체육청소년시설부	체육시설운영팀	체육관	8	-	8
			볼링장	6	-	6
		맑은누리편익시설팀		21	-	21
		청소년수련관		24	-	24
		청소년수련원		9	-	9
	관광휴양시설부	학가산온천팀		16	-	16
		단호휴양시설관리팀		7	-	7
		계명산휴양림관리팀		6	-	6
환경복지시설본부	환경시설부	안동환경팀		30	-	30
		풍산환경팀		12	-	12
		풍천환경팀		11	-	11
		공동구관리팀		9	-	9
	복지사업부	수도검침팀		24	-	24
		주차관리팀		20	-	20
		장사문화공원팀		9	-	9
		교통약자지원팀		21	-	21

[별지 제8호서식]

근무성적 평정표 (역량평가) - 보직자

소속 : 직급 : 성명 :
 평정기간 : . . . 부터 . . . 까지

※ 평정자·확인자는 해당란에 ○ 표시

구 분	역 량	배점	역량항목별 평가착안점	평 정 자					확 인 자				
				직위		성명	(인)		직위		성명	(인)	
				수	우	미	양	가	수	우	미	양	가
공통 역량	전문성	10	① 소관업무에 대한 기술적, 절차적인 면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의 확보 여부 ②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고 최신지식과 정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	10	9	8	6	4	10	9	8	6	4
	고객지향	10	①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해 고객에 대한 친절성과 배려심을 갖고 실행하는 능력 ② 업무추진 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중심적인 서비스개선 처리능력	10	9	8	6	4	10	9	8	6	4
	윤리의식	10	① 사적인 이해에 기초하지 않고,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사결정 하는 능력 ②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	10	9	8	6	4	10	9	8	6	4
리더십 역량	리더십	10	① 부서원의 판단력과 능력을 존중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 ②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지시를 이행하고 부서목표를 달성하도록 코칭하는 능력	10	9	8	6	4	10	9	8	6	4
	의사결정 판단력	10	① 인화력이 뛰어나 외부와의 교섭, 절충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능력 ② 문제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권한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능력	10	9	8	6	4	10	9	8	6	4
총점													
조정 점수													
최종 점수 및 등급													
순위													

* 수 = 탁월 / 우 = 우수 / 미 = 보통 / 양 = 미흡 / 가 = 부족

근무성적 평정표 (역량평가) - 비보직자

소속 : 직급 : 성명 :
 평정기간 : . . . 부터 . . . 까지

※ 평정자·확인자는 해당란에 ○ 표시

구 분	역 량	배점	역량항목별 평가착안점	평 정 자					확 인 자				
				직위	성명	(인)			직위	성명	(인)		
				S	A	B	C	D	S	A	B	C	D
공통 역량	전문성	10	① 소관업무에 대한 기술적, 절차적인 면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의 확보 여부 ②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고 최신지식과 정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	10	9	8	7	6	10	9	8	7	6
	고객지향	10	①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해 고객에 대한 친절성과 배려심을 갖고 실행하는 능력 ② 업무추진 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중심적인 서비스개선 처리능력	10	9	8	7	6	10	9	8	7	6
	윤리의식	10	① 사적인 이해에 기초하지 않고,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사결정 하는 능력 ②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	10	9	8	7	6	10	9	8	7	6
직 무 역 량	책임감	5	① 조직과 자신의 각 직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며 책임을 지는 능력	5	4	3	2	1	5	4	3	2	1
	협조성	5	① 타 구성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, '팀/부서의 일원'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능력	5	4	3	2	1	5	4	3	2	1
	상황대처 능력	5	① 돌발적인 문제 발생 또는 위기상황 시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,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	5	4	3	2	1	5	4	3	2	1
	업무 추진력	5	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및 인적·물적 자원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장애를 극복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는 역량	5	4	3	2	1	5	4	3	2	1
총점													
조정 점수													
최종 점수 및 등급													
순위													

* S = 탁월 / A = 우수 / B = 보통 / C = 미흡 / D = 부족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 변경
- 면접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에 따른 지급 근거 마련
- 포상의 평정 중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근거 명문화
- 예비 합격자 운영 시 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
- 별표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기준에 맞게 개정

□ 주요내용

- 제7조제3항 중 면접위원에 대하여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
- 제 10조의1(예비합격자 운영) 제2항 중 채용 예정 인원이 “3명 미만인 경우”를 “10명 이하인 경우”로 변경
- 제36조(포상의 평정) 제3항 중 “수여받은 것”을 “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 받은 것”으로 변경
- 별표 4의 2 및 별표 11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별표 8-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변경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94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마목 중 “4급 부서장”을 “4 ~ 5급 부서장 및 팀장(보직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3호 본문 중 “100,000원”을 “예산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변경
-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

□ 주요내용

- 제2조 제3호 마목 시간외근무수당(기본 10시간) 지급 대상을 “4급 부서장”에서 “4~5급 부서장 및 팀장(보직자)”로 변경
- 제2조 제7호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
- 제5조 제3호 이사회 참석실비 중 1인당“100,000원”에서 “예산 범위”로 변경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피복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95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피복시행 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피복시행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임·직원(일용직을 포함한다)”을 “임·직원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일용직 직종 폐지로 인하여 규정 정비

□ 주요내용

- 제2조(적용범위) 중 ‘일용직을 포함한다’ 문구 삭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용차량 관리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
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96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용차량 관리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용차량 관리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0호 서식 중 “경영지원실장”을 “안전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0호서식]

차량배차신청서					결 재
NO.					
사용일시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				
행 선 지					
용 무					
사 용 자	외 명				
유 류		차량 번호			
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부서장 (인) <u>안전감사실장</u> 귀하					
※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		

차량배차승인서			
NO.			
차량번호		운전원	
배차일시	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		
행 선 지			
용 무			
사 용 자			
유 류		운행 거리	Km
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 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 년 월 일 <u>안전감사실장</u> (인) ○○○부서장 귀하			
※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			

[별표 2]

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(제6조 관련)

1. 승용차기준정수

차량배정 대상부서	기준 정수	차 형 별					
		승용(전용, 의전용) (대형, 중형, 소형 및 경형)		업 무 용 (대형, 중형, 소형 및 경형)			
		대 형 승용차	중 형 승용차	승용	승합용	화물용	특수용
안전감사실	1	1					
체육청소년시설부 (청소년수련원)	1					1	
관광휴양시설부 (단호휴양시설관리팀)	1					1	
관광휴양시설부 (계명산휴양림관리팀)	1					1	
환경시설부 (안동환경팀)	5					3	2
환경시설부 (풍산환경팀)	2					2	
환경시설부 (풍천환경팀)	2					1	1
복지사업부 (교통약자지원팀)	19				19		

2. 승합용차량 기준정수

사 업 별	배정대상·차형 및 대수
직원 및 고객 수송용	○ 공단 직원 및 고객 수송용 중형 및 대형 버스
기타 사업용	○ 기타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배정

3. 화물용차량 기준정수

사 업 별	배정대상·차형 및 대수
하수도 사업용	하수도 발생량 및 처리량, 송·배수관 연장, 급수인구, 시설·규모·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 차형과 대수를 배정
기타 사업용	각종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·감독을 요하는 사업량,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

4. 특수용차량 기준정수

사 업 별	배정대상·차형 및 대수
기 타 용	사업의 성격,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및 부서명 변경

□ 주요내용

- 별지 제10호 서식 중 경영지원실장을 안전감사실장으로 변경
- 별표2 중 부서명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으로 변경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시간선택제 시행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97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시간선택제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시간선택제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성과급)”을 “(평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성과급”을 “평가급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4. 7. 9.)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성과급 명칭 변경

□ 주요내용

- 제18조 성과급을 평가급으로 문구 변경